

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. 4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관련법령인 「회사정리법」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회사정리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
관련조문 변경(안 제3조)

3. 조례개정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련법령

○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다음 각 호1” 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, 제2항제4호 중 “회사정리법 제241조” 를 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” 로 한다.

제11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1” 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제3조(위원회의 직능) ① (생략) ②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<u>다음 각 호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회사정리법 제241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	제3조(위원회의 직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1조</u>----- -----	○ 관련법령 개정
제11조(위원회 해촉)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<u>다음 각 호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제11조(위원회 해촉) ----- ----- 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	○ 알기쉬운 법령

관 련 법 령

◎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제251조(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)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, 주주·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. 다만,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